

결의안 20-92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주거용 퇴거유예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고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월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인의 퇴거를 금지하는 퇴거유예를 시행하는 공공명령3호를 발령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24일에 시의회가 퇴거유예에 14일 통지조항을 추가하여 명령을 수정하고, 인준하고 연장하였다.

2020년 3월27일, 주지사는 세입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납부일 이전이나 이후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주거용 세입자가 퇴거소송에 대응할 시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N-37-20)을 발령하였다.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는 만기된 월세를 납부할 때, 집주인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가 나오고, 시의 14일 통지조건을 대신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020년 4월 6일, 캘리포니아 사법의회는(CJC) - 주법원에 대한 행정권- 주지사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비상사태선포의 해지를 선포하고 90일까지 퇴거소송 소환장의 발급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령을 발령하였다. 퇴거가 보건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이며 또한 기존의 사건을 최소한 60일까지 연장하였다.

2020년 4월 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주거용 퇴거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르게 하는 퇴거유예명령을 수정하고 또한 퇴거소송을 연기하고 집주인이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 이자의 부과나 수금, 혹은 연기된 월세를 수금하기 위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사법회의의 명령을 수정하는 공공명령 6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의해 시의회는 퇴거유예에 대한 원금회수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공공명령 6호를 인준하고 확장하였고 공공명령 퇴거유예를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결의안 20-53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12일에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소매점과 식당, 술집, 포도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피트니스 시설, 개인미용업소 등의 업소에 찾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재택대피령과 재택, 직장, 커뮤니티 안전령의 제한사항을 점진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재택, 직장, 커뮤니티 안전령을 점차적으로 풀고 있지만, 많은 업소가 업소 폐쇄나 제한, 근무시간과 급여 손실,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해고의 결과로 상당한 수입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임대료를 계속 낼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퇴거에 취약하게 된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므로, 과거 결의안과 공공명령 만료일의 연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 보전을 위해 추가 보호를 채택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항. 주거용 퇴거에 대한 퇴거유예를 시행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53호는 다음과 같이 이에 연장된다

주거용 임대에 관한 퇴거유예. 전례없는 이 비상사태동안, 글렌데일 주민에게 구호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까지 주거용 임대에 대한 퇴거유예를 연장한다.

-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30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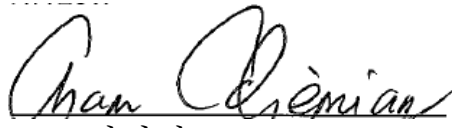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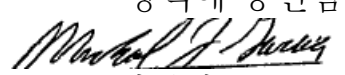

시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92호를 2020년 6월 30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롯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궐석: 없음
기권: 없음


시서기

양식에 승인함

시검사
날짜 6/30/2020

결의안 20-93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주거용 월세인상과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24일, 결의안 20-33호에 따라 시의회는 이전 명령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코스타 하킨스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임대료동결에서 면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유닛의 주거용 임대동결을 시행하였습니다. (1995년 2월 1일 전에 신축된 유닛, 단독주택, 개인콘도유닛)

2020년 3월 25일, 비상사태국장은 임대인상을 이전에 한 것과 상관없이 임대료동결명령으로 임대료 동결에 적용하고, 또한 명령이 효력이 없어진 이후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집주인은 새롭게 임대 인상 통지서를 발부하게 하는 규정한 공공명령 5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의해 시의회는 임대료동결에 관한 공공명령 5호를 인가하였고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고, 2020년 5월 12일에 결의안 20-56호에 의거하여 시의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채택, 직장, 커뮤니티 안전령을 점차적으로 풀고 있지만, 많은 업소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업소 폐쇄나 제한, 근무시간과 급여 손실, 혹은 해고의 결과로 상당한 수입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임대료를 계속 낼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퇴거에 취약하게 된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므로, 과거 결의안과 공공명령 만료일의 연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 보전을 위해 추가 보호를 채택해야 한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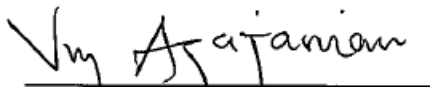
1항. 주거용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56호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30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시서기

양식을 승인함



시검사

날짜 6/30/2020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93호를 2020년 6월 30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궐석: 없음
기권: 없음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Chan Ajemian",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시서기

결의안 20-94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얼굴 가리개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주민이 지난 몇 달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공한 것을 충분히 증명하여 카운티의 보건관은 업소, 사회활동, 기타 활동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복귀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시정부가 재개하는 추가적 요소를 더하면서, 주민들은 대면 접촉을 늘리게 되고,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날 위험이 생기며 대면 접촉을 더욱 하게 되면서 한 사회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가지 보호방법은 얼굴 가리개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신체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일반적인 표면소독 등의 기타 건강과 안전조치를 합치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추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한 과학적 증거로 증명되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커뮤니티로 더 자주 나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치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 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 특히 나이나 건강상태로 인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함으로써, 시정부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더 안전한 방식으로 업소를 개방하고 활동을 더 잘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에 관한 공공명령을 수정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 보건관은 제한적인 예외사항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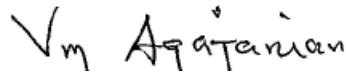
1항. 결의안 20-41호와 20-62호에 의해 얼굴가리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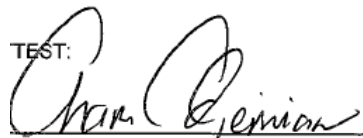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30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TEST: 
시서기

양식을 승인함


시검사

날짜 6/30/2020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94호를 2020년 6월 30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서기

결의안 20-95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알프레스코 식사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2020년 3월 16일에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질병2019(코로나19)으로 인해 커지는 우려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확진자 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가능한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에 시의회는 특정 공공시설의 출입을 폐쇄하고 제한할 것을 명령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제외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서비스는 문을 닫았던 카운티의 재택대피령과 일치하여 결의안 20-29호를 채택하였다.

2020년 5월 15일, 글렌데일의 결의안 20-29호는 -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과 관련 - 만기되었고 그 업소와 영업은 카운티의 재택대피령으로 계속 규제한다.

2020년 5월 26일경에 카운티 규정에 부합하면 식당 내 식사서비스를 위한 식당과 가게 내부의 쇼핑서비스를 위한 소매점에 대해 부분적인 재개를 허가하도록 재택대피령을 수정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비지니스 회복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소매점, 환대산업, 사무실, 헬스케어 등에서 글렌데일의 주요 산업체를 대표하는 40명 이상 이해관계자와 만났다.

대책위원회원들은 시가 지역업소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냈고, 권고안 중에서 앞으로 추가 야외식사와 잠정적 소매영업을 위한 개인주차장, 길거리 주차구역, 보도를 개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시행이 있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시행으로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식당들이 야외식사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시 업소와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그동안 카운티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재개하기와 커뮤니티 명령을 점진적으로 이행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을 발령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비상사태 공공명령 10호는 이에 인가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A.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업소 운영을 바꾸고 운영을 병경하기 위해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이 필요한 업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 지역 비상사태 기간동안 임시 사용을 위한 허가증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 - 야외식사를 위한 개인주차장의 사용 요청에 필수** : 수수료는 한시간에 166달러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다.
 - 주의: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결과로 면제를 신청하는 업소에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예, 야외식사를 하는 것 외에 임시 수용인원증서를 신청하는 신청인에게 수수료가 있다)
 - 2020년 12월 31일에 허가증은 자동으로 만기될 것이다.
- **보도 식사 허가증 - 보도 식사와 파클렛에 필수** : 수수료는 233달러 더하기 연간 면허 수수료로 스퀘어 피트 당 2달러 23센트.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면제를 신청하는 업소에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 2020년 12월 31일에 허가증은 자동으로 만기될 것이다.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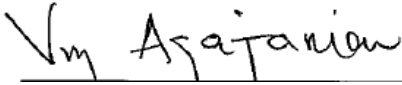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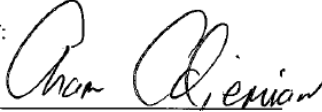
///

///

2020년 6월 30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시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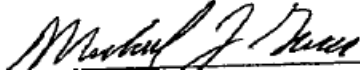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95호를 2020년 6월 30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룟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서기

양식을 승인함:


시검사

날짜: 6/30/2020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 보고서

안전 사항

보고: 코로나19 업데이트; 상업용 및 주거용 퇴거유예, 임대료 인상동결, 얼굴 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의 연장이나 수정을 재고

1. 상업용 퇴거유예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수정/연장하는 결의안
2. 주거용 퇴거유예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수정/연장하는 결의안
3. 주거용 임대료 인상 동결과 관련된 공공명령을 수정/연장하는 결의안
4. 얼굴 가리개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수정/연장하는 결의안
5.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위한 야외식사 허가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공공명령을 인가하는 결의안

시의회 조치

사안 종류: 조치 사안

2020년 6월 30일 달력으로 승인됨

행정조치

제출인 :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애즈민 K. 비어스, 시행정관

작성인: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검토인:

미셸 플린, 재무부장
루빅 R. 골라니안, P.E., 시 부행정관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승인:

애즈민 K. 비어스, 시행정관

권고안

시의회가 코로나19 업데이트를 받고 주거용 및 상업용 퇴거유예, 주거용 임대료 인상동결, 얼굴 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추가로 야외식사를 추가하여 업소의 운영을 변경하는 식당사업체에게 임시 수용인원 증서와 보도 식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의 공공명령을 시의회가 인가할 것도 권한다.

배경/분석

전례없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에 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시는 규제조치, 경제개발, 세입자보호, 주민과 사업체를 돕기 위한 지원 등으로 생명, 재산, 공중보건,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하였다. 규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 비상사태 선포
- 주거용 퇴거유예 시행,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상업용 퇴거유예 시행,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주거용 임대료 인상동결 시행,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개인들이 주거지를 나오면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추가적으로, 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침체로 피해입은 지역업소에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2020년 5월 19일, 시의회는 S법안 자금으로 2020-21년 회계연도 예산에 다양한 경제개발계획과 업소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포함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기업 회복과 지원 프로그램, 개인보호장비 (PPE) 보조금, 예술지원 프로그램, 육아지원, 비상사태 회복자금의 이용을 향상함. 이에 대해, 시는 업소와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자금으로 총 2백75만달러가 되는 세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하였다.

- (1) 비상사태 임대료지원 프로그램 (CDBG-CV에서 572,500달러), 글렌데일 저소득층 세입자주민에게 최대한 1,5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함
- (2) 코로나19로 피해입은 114개의 비필수 업소와 식당이 영업지출과 저소득층 직원의 해고 반감을 돕기 위해 최대한 5,000달러까지 제공하게 되는 저소득 소기업 보조금(CDBG-CV에서 572,500달러)
- (3)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320개 업소에 5,000달러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소기업 회복 보조금 (글렌데일 S법안으로 1,600,000달러)

캘리포니아 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하는 주전역 “지침” (증거자료2번)을 시행했다.

- 공공장소 실내에 있거나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경우
- 병원, 약국, 보건소, 검사실, 의사 사무실 혹은 치과, 동물병원, 헌혈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 대중교통이나 준교통수단이나 택시, 자가용 서비스, 혹은 차량공유차를 기다리거나 타는 경우
- 직장이나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일반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
 - 일반대중이 찾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대중이 당시 있는 여부와 상관없음
 - 판매용이나 유통용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동구역에서 근무하거나 걸어가는 경우
 - 신체적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있는 방이나 폐쇄구역 (가족이나 주거지는 예외)
- 승객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준교통수단이나 택시, 자가용 서비스, 혹은 차량공유차를 운전하거나 가동하는 경우. 승객이 없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강력히 권한다.
- 같은 가족 혹은 같은 주거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6피트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실외인 공공장소에서 있는 경우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에서 신청서와 면제를 포함하는 얼굴가리개 명령을 비교하는 표는 증거자료 3호로 첨부되었다.

시의회는 시의 얼굴 가리개 명령을 연장하거나 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명령에 의존할 수도 있다. 시의회가 명령을 연장하는 경우, 시의회는 비상사태 기간동안 연장할 것을 권한다. 필요할 때마다, 시의회나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명령을 이룬 시기에 종료할 권한이 있다.

야외 식사 허가증 수수료의 면제 (알프레스코)

시의 영업회복전략의 일환으로, 시의회는 행인과 손님이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게 개인 주차장, 길거리 주차구역, 도보구역에서 추가 야외식사를 개발하는 알프레스코 글렌데일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스태프에게 지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시의회는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프로그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야외식사 허가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공공명령을 발령하는 스태프의 권고안에 동의하였다. 2020년 6월 16일에 국장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을(2020-10호) 발령하였다. 글렌데일 시정부법이 규정하는 바, 스태프는 시의회가 비상사태 공공명령을 인준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재정적 영향

스태프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야외식사 허가증과 관련된 허가증 수수료의 면제로, 다음과 같은 추산에 따라 50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할 때, 약 44,000달러의 재정적 영향이 있게 된다고 추산한다.

1,000 스퀘어 피트 파클렛을 이용하는 업소

- \$233 허가증 수수료 x 스퀘어 피트 당 \$2.23
- 업소들은 각각 500 스퀘어 피트를 사용하여 파클렛을 공유해야 한다.
- 15곳 업소들이 파클렛을 사용하게 된다.
- 업소 당 평균 수수료: \$1,348
- 파클렛을 사용하는 15개 업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총 추정액: \$20,220.

연장된 보도 허가증을 사용하는 업소

- \$233 허가증 수수료 x 스퀘어 피트 당 \$2.23
- 야외 식사공간/ 업소로 250 스퀘어 피트를 추정함
- 연장된 허가증을 이용하는 업소는 약 15곳
- 업소 당 평균 수수료: \$790
- 보도식사를 연장하는 15개 업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총 추정액: \$11,857.

임시 수용인원 증서를 사용하는 업소

- TCO 수수료는 시간당 \$166
- 허가증 당 3.5 시간으로 추정
- 허가증을 이용하는 업소는 약 20곳
- 업소 당 평균 수수료: \$581
- 개인주차장을 사용하는 20개 업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총 추정액: \$11,620.

대안

1. 시의회는 상업용 및 주거용 퇴거유예, 임대료 인상동결, 얼굴 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연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 시의회는 상업용 및 주거용 퇴거유예, 임대료 인상동결, 얼굴 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수정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2020년 6월 30일에 만기되게 둔다.
3. 시의회는 스태프가 파악하지 못한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캠페인 공시

해당없음

증거자료

1. 얼굴 가리개 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62호
2. 얼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침
3.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시의 얼굴 가리개 규정을 비교하는 표

결의안 ____호

코로나19와 그외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얼굴가리개에 대한 공공명령을 발령한 이전 결의안을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 주민이 지난 몇 달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공한 것을 충분히 증명하여 카운티의 보건관은 업소, 사회활동, 기타 활동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복귀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시정부가 재개하는 추가적 요소를 더하면서, 주민들은 대면 접촉을 늘리게 되고,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날 위험이 생기며 대면 접촉을 더욱 하게 되면서 한 사회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가지 보호방법은 얼굴 가리개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신체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일반적인 표면소독 등의 기타 건강과 안전조치를 합치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추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한 과학적 증거로 증명되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커뮤니티로 더 자주 나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치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 주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 특히 나이나 건강상태로 인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함으로써, 시정부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더 안전한 방식으로 업소를 개방하고 활동을 더 잘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에 관한 공공명령을 수정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이 명령은 2020년 6월 3일 밤 11:59분에 발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되며, 결의안 20-55호를 수정하고 대신하게 된다.

A. 이 명령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얼굴 가리개”는 천, 형짚, 부드럽거나 투과되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구멍이 없는 가리개이며, 코와 입과 하부얼굴 주위만 가리는 것을 뜻한다. 착용자의 눈이나 이마를 가리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가리개는 얼굴 가리개가 아니다. 얼굴 가리개의 예는 스카프나 두건, 목 가리개, 티셔츠, 운동복, 수건으로 된 집에서 만들고 고무줄 등으로 고정시킨 가리개, 혹은 의료 등급이 아니어도 되는 마스크다.

얼굴 가리개는 공장에서 만들었거나 수제품이고 일반 가정용품에서 즉석으로 만든 것이어도 된다. 얼굴 가리개는 편안해야 하며, 착용자가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고 자주 고치지 않아야 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할 때마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얼굴 가리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주 세척해야 하고, 여분이 있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마스크가 있어야 한다. 얼굴 가리개의 세척에 대한 정보는 CDC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how-to-wash-cloth-face-coverings.html>

N95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등급 마스크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면, 이 명령에 의해 일반인이 그러한 마스크를 얼굴 가리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면 안된다. 의료제공인과 구급요원을 위해 의료 등급 마스크를 따로 남겨두어야 한다.

숨을 내쉬기 쉽게 만들어진 한 방향 밸브가(보통 마스크의 앞면이나 옆면에 25센트 동전 크기만하고 높이 올린 플라스틱 원통) 포함된 마스크는 마스크에서 침방울이 배출되게 되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명령으로 이 마스크는 얼굴 가리개가 아니고 이 명령의 요건에 준수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된다.

얼굴 가리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온 비디오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세척하는 방법은 CDC 웹사이트에 나오게 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B. 시의 모든 사람은 가정, 주거유닛, 주거하는 장소 밖에 있을 때 (“주거지 외부”인 경우)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1. 2세 이하 어린이(신생아 포함)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세부터 8세 어린이는 사용해도 되지만 안전하게 숨을 쉬고 숨이 막히거나 질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인의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된 활동을 하는 특수 장애인이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받아들이고 [http://www.lapublichealth.org/media/Coronavirus/docs/HOO/HO_Order_COVID-](http://www.lapublichealth.org/media/Coronavirus/docs/HOO/HO_Order_COVID-19_Safer_at_Work_and_in_the_Community_05292020_FINAL_WithAppendices.pdf)

[19_Safer_at_Work_and_in_the_Community_05292020_FINAL_WithAppendices.pdf](http://www.lapublichealth.org/media/Coronavirus/docs/HOO/HO_Order_COVID-19_Safer_at_Work_and_in_the_Community_05292020_FINAL_WithAppendices.pdf)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규정을 전부 따르면 얼굴 가리개의 착용이 면제된다. 관련 업소에서, (i) 시설 입구나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규정의 통지문을 일반인과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ii) 시설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규정의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iii) 요구받으면 업소는 규정을 시행한 증거를 이 명령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 제공해야 한다.

2. 혼자 있거나 혹은 직장에 있는 등 건물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오직 가족이나 주거유닛 구성원과 있는 경우, (ii) 6피트 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 (iii) 동료직원, 고객, 건물직원, 일반인 등 다른 사람과 앞으로 며칠 동안 몇 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당시에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곧 만질 수도 있는 표면이 오염될 위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일상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변하는 업무일정으로 책상이나 개인 사무실 혹은 도구, 공급품, 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를 공유하는 공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모범적으로 제한없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주거 공간을 찾아가는 배관공, 교사, 간호보조인, 파출부 등 사람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도 방문객이 가까이 있으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공유하지 않고 미리 경고없이 다른 사람이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까운 장소에 들어오고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두 사람은 만나는 시간동안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음식이나 물건, 배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때 혼자 있더라도 음식이나 물건을 준비하면서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3. 자동차 안에 있고, 혼자 있거나 또는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응급요원, 요식업 근무자, 가족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문으로 내려야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지방, 주, 연방규정, 혹은 직장 안전수칙에 따라 얼굴 가리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생기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숨쉬기 곤란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불구자거나, 도움없이 얼굴 가리개를 벗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로 인해 영업일에 상당한 시간동안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등 상당한 육체노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면서 얼굴 가리개의 착용으로 위험이 생기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동료직원들이 적절하게 신체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작업장에서 6피트 거리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5. 바깥에서 혼자 있거나 또는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얼굴 가리개를 눈에 보이게 두고 입과 코를 즉시 가릴 준비를 (목 근처에 걸어두기) 해야하며, 바깥에서 30 피트 내에(10 야드) 아무도 없어야 한다.(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이 아님)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을 때, 바깥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30 피트는 자동차 두 대가 나란히 한 줄로 있는 길이 정도이다. 사람들이 서로 접근하고 몇 초만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 30피트 내에 있을 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이 보도, 공원, 좁은 길이나 오솔길, 기타 외부장소에 있을 때, 그리고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기타 운동하기, 서있기, 오토바이, 스케이트보드, 모페드 (모터달린 자전거),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 교통수단을 타고 있을 때 이 30 피트 규칙은 적용된다. 거리를 좁히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6피트 내에 있을 때, 바이러스 확산에 더 큰 위험이 생기게 될 때, 30 피트 (10야드) 거리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이곳에서 사용된다. 활동을 더 허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별다른 경고없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30 피트 내에 있을 때 얼굴 가리개 착용이 필수적이 된다.

6. (i) 혼자있거나 가족이나 주거유닛 구성원과 같이 있는 경우 (ii) 실내나 실외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 (iii) 6피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식당같이 요식업종에서 주정부가 발령한 지침이나 별도 보건국 명령이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서버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

7. 질병통제국의 지침을 따르고 글렌데일 시정부 부서 방침으로 규정된 바 공공안전 구급요원은 보호용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C. 상기 나온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얼굴 가리개는 의무적이다.

1. 보건관이나 지시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이 의무화된 경우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명령이나 지시의 조건이 이 명령보다 더 엄격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판매용이나 음식이나 다른 물건을 처리하고, 준비하고, 포장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가족이나 주거유닛의 구성원을 위해 음식이나 물건을 준비하는 경우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중교통이나 준대중교통 차량, 택시, 개인 자동차 서비스나 차량공유 차량의 운전사나 운영자는 차량을 운전하고, 작동하고, 서있고, 앉아있을 때, 차에서 호흡 침방울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에 있거나 없거나 얼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석이 신체적으로 분리된 점과 운전자들의 청소 규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차량의 운전사나 운영자는 터미널에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차가 멈췄을 때, 타고 있는 손님이 없을 때, 얼굴 가리개를 빼고 있는 것이 허용된다.

D. 이 명령의 목적은 자택대피령으로 허가된 바에 따라 시에서 주거지 바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퍼트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확실히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일반인이 바이러스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에 끼치는 피해를 줄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명령의 모든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E. 고용주는 직원이 최소한 30분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비 의료용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필수 청소용품이 잘 보관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한다. 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권고한 손 세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용주 부담으로 제공하는 살균제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고객, 방문객, 직원들이 서로간에 가능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고객과 방문객은 직원과 고객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나 운영자는 이 명령으로 규정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매업체는 모든 판매 시점에서 계산원과 고객을 분리하는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F.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관은 합법적으로 구금된 개인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얼굴 가리개가 없으면, 치안관이 제공하게 된다.

2항.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공공명령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가 되면, 무효 조항 혹은 적용없이 실행하는 이 결의안이나 명령의 조항, 구절, 적용에 대해 그러한 무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절, 조항, 문장, 단어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원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기소하기 위해 시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경관은 각자 재량을 사용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엄두에 둔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하고, 이에 규정한 집행방식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 세번째 소환장은 \$2,000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2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M. A. Aguirre

시장

증명함:

Aram Adjemian

시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____호를 2020년 6월 2일에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반대:
결석:
기권:

Aram Adjemian
시서기

양식을 승인함	
이름:	<u>마이클 J 가시아</u>
직분:	<u>시검사</u>
서명:	<u>Michael J. Garcia</u>
날짜:	<u>2020년 6월 3일</u>